

조정을 갈음하는 결정

사 건

[redacted] 이혼 및 재산분할

신 청 인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피 신 청 인

[redacted]

[redacted]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 정 사 항

1.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.
2.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

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.

3. 나머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.

4.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